

동향과 분석

북한의 종합시장: 실태, 파급효과, 성격과 의미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I. 머리말

지난 2003년에 등장한 종합시장은 어느덧 현 단계 북한 경제개혁의 핵심적 및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외부의 관찰자들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논할 때 거의 예외 없이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으로 대표되는 종합시장을 거론하고 있다. 더욱이 시장의 확대는 최근 북한의 변화를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개혁'으로 인정하는 견해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정책을 경제개혁으로 평가하길 주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종합시장의 존재 그 자체는 최근의 북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적극적 해석과와 소극적 해석과의 인식의 간극을 결정적으로 좁혀줄 정도는 아니다. 사실 종합시장의 실제 움직임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판단을 하기 이전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때로는 공허하기조차하다.

판단 이전에 사실(fact)을 모아서 축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미 존재하는 자료에 필자가 모은 자료를 보태서 종합시장의 실태, 파급효과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종합시장의 성격과 의미, 향후 전망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짧게 제시해 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북한의 공식문건, 『조선신보』의 보도내용, 필자의 탈북자 면담 결과¹⁾ 등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도 관련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 등으로 해석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종합시장 도입의 성과, 파급효과 등은 7·1 경제관리조치의 그것

1)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을 이탈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면담결과.

과 결합되어 나타나므로 종합시장의 영향만을 독립적으로 추출해내기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글은 활발한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으로 그 임무를 국한한다.

<표 1> 면담 탈북자 인적사항

구분	연령	탈북연월	주된 거주지역	주요 경력
탈북자 A씨	29	2003.4	함북 온성	탄광 관리직
탈북자 B씨	35	2004.4	함북 새별	공장 관리직
탈북자 C씨	30	2004.4	함북 새별	상점 출납원
탈북자 D씨	24	2003.12	함북 회령	공장 노동자
탈북자 E씨	32	2003.3	함북 화대, 새별	노동자, 장사
탈북자 F씨	23	2003.6	함북 무산	상점 출납원
탈북자 G씨	40	2004.3	함북 청진	개인수공업
탈북자 H씨	34	2003.6	함남 단천	장사
탈북자 I씨	34	2003.11	양강 대흥단	공장 노동자, 장사
탈북자 J씨	62	2003.3	강원 원산	무역회사 간부
탈북자 K씨	44	2002.12	평남 덕천	공장 관리직
탈북자 L씨	47	2003.5	남포	가내수공업
탈북자 M씨	40	2003.9	황남 배천	장사
탈북자 N씨	39	2004.2	평양	무역회사 지도원
탈북자 O씨	56	2003.8	평양	내각 위원회 간부
탈북자 P씨	54	2003.8	평양	주부
탈북자 Q씨	31	2003.8	평양	회사 지도원
탈북자 R씨	28	2003.8	평양	식당 관리직
탈북자 S씨	52	2002.9	평양	합영회사 간부
탈북자 T씨	43	2003.10	평양	공장 관리직

2. 전제적 논의

가. 개념적 틀

사회주의 경제개혁에서 핵심적 요소는 시장화(marketization)이다. 그런데 시장화란 다양한 차원의, 또한 여러 가지 범주의 개념이다. 우선 시장은 크게 보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²⁾ 하나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고 또 하나는 장소로서의 시장이다. 이

2) 자세한 것은 Polanyi(1983), pp.173-175, 山口重克編(1997), pp.21-26 참조.

두 가지 개념은 일부 중복되면서 각각 상이한 영역을 포괄한다.³⁾

따라서 시장화는 한편으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화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발신하는 정보의 시그널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 단위의 경제적 행동,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장화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적 및 기능적으로는 지역시장과 외부시장⁴⁾, 전국적 시장, 세계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시장은 또한 거래대상에 따라 크게 보아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좀더 세분해서 보면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이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존재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기업은 원자재, 자금, 노동력 등과 같은 투입물을 국가계획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피공급, 할당)하고 생산물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상업기관에 인도(공급)한다.

따라서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지역시장과 외부시장이 통합되고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가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생산재시장, 소비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가지 시장이 발생, 확대되고 아울러 생산의 기본단위인 기업(또는 개인수공업자)이 원자재, 자금, 노동력의 조달과 생산물의 처리를 시장을 통해 수행하고 그 비중이 점차 증대하면 시장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 사회주의 경제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시장화는 대개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결정구조 측면에서의 변화, 즉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로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화와 함께 소유구조에서도 변화가 발생한다면, 즉 부분적이거나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장화의 진전 정도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가능하다.

한편 제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시장은 가격기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우리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이다. 그 요소들이란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공급자, 수요자, 관습 또는 법 등이다. 그

3) 예를 들어 재래시장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흥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개념이 겹쳐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식량 또는 식료품이 소량이라도 원칙적으로 고정가격으로 팔리는 일종의 공영시장에서는 장소로서의 시장만 단독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시스템으로서의 시장만 단독으로 나타난다.

4) 지역시장은 공동체 내부의 시장이고 외부시장은 공동체 외부로부터의 재화의 획득과 연결된 시장이다.

리고 근대사회에서는 상품과 화폐가 중요성을 가진다.

상품(commodity)이란 교환하기 위해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상품생산이란 자기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팔기 위하여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품생산은 두 가지 역사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 하나가 사회적 분업의 발전이고 또 하나가 생산수단 혹은 생산물에 대한 사적 소유의 존재이다. 따라서 상품경제의 발달 또는 상품화의 진전은 이들 두 가지 조건의 발달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생산의 발달로 인한 교환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또한 필연적으로 화폐를 발생시킨다.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는 유일한 등가물이 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화폐는 상품유통의 보조기능뿐만 아니라 화폐로서의 화폐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즉 화폐는 모든 상품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구매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획득이 교환의 목표로 된다. 여기서 화폐가 개인의 수중에 쌓이게 되는 현상, 즉 화폐축장이 나타난다.

이러한 화폐경제의 발달 혹은 화폐화(monetization)는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 나아가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화폐의 기능 변화에 조응하는 것이다. 즉 고전적 사회주의 단계에서 화폐는 전반적인 계획화 체계 내에서 단순계산 기능 및 부분적인 유통매개 및 지불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던 것이 경제개혁, 나아가 체제전환과정에서는 가치측정, 가치저장(축장)의 기능까지 부여받게 되면서 화폐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적극적·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러한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혹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은 시장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은 시장화의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시장화를 촉진한다. 동시에 시장화도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 수준 여부 및 그 수준은 시장화의 진전 여부 및 그 수준을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다.

나. 종합시장 도입 및 관련조치

북한민중구출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북한의 내각결정 제24호(2003.5.5)⁵⁾와 내각결정 제27호(2003.5.5)는 북한의 종합시장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종합시장의 설치, 운영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5) 특히 내각결정 제24호(2003.5.5)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긴 제목을 붙이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들을 잘 꾸리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둘째,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들도 종합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시장한도가격과 상품가격을 제대로 정해주고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리고 얼핏 보아 종합시장과 관계가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다. 첫째, 국영상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회사들이 상점을 운영하게 했다. 둘째, 기관·기업소들에 대해 일정한 범위의 현금유통을 허용하도록 했다.

일견 고개가 가우뚱거려진다. 앞의 3가지야 납득할 수 있지만 뒤의 2가지 조치들은 얼핏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당국은 왜 이들 2가지 조치들을 새롭게 내놓았던 것일까.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이들 조치가 김정일 위원장이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종합시장의 등장이 단순히 기존 암시장을 합법화, 양성화한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훨씬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3. 종합시장 운영실태

가. 상품의 수급구조

종합시장에 대한 물품의 유입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농민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8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암거래가 늘어났고 특히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에 들어와 암거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했다. 합법과 불법이 뒤엉키게 되었다.

기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을 공급원별로 또한 합법 여부를 고려하여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제품의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생산, 수입 등)의 합법 여부와 그 제품의 농민시장 유통의 합법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합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공급원천이 합법이나 장마당에의 유통이 불법이었던 제품, 즉 개인부업(개인수공업) 식료품, 생필품(공업품), 공식부문 생산 식량, 생필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등의 유통이 새롭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급원천이 불법이고 장마당에의 유입도 불법인 제품의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현재 종합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던 품목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제품의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게 되는 과정(생산, 수입 등)의 합법 여부

<표 2> 기존 농민시장에 대한 제품공급루트

구 분	제품의 공급원천	공급원천의 합법 여부	농민시장 유통 합법 여부
개인 차원의 생산물	텃밭 생산 농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농축산물	합법	합법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	합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불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	불법	불법
기업(농장 포함) 차원의 생산물	공식부문 생산 식량, 공산품	합법(기업입장)	불법
	공식부문 절취·유출 식량, 생필품, 원자재	불법(개인입장)	불법
중국 등 제3국 유입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합법	불법
	개인·기관에 의한 밀수품	불법	불법
국제사회의 지원물자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출 물자	합법	불법

도 크게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따라서 종합시장은 무엇보다도 기존 암시장의 합법화 및 목인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공산품이나 식량 가운데 일정 부분은 공급원천이 불법인 경우, 즉 농장이나 공장, 군대에서 절취·유출했거나 개인·기관이 밀수입한 경우이므로 국가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즉 식량과 공산품에 대해 공급원천을 추적해서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⁷⁾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합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캐지 않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⁸⁾

한편 현재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압도적 다수는 중국산 제품이라고 탈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북한산 제품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⁹⁾ 탈북자 R씨는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는 7골 시장의 사례를 전하고 있다. 국내산 공업

6) 탈북자 I씨는 “일단 시장에 들어온 물건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출처를 캐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히고 있다.

7) 제일 조선인 학자와의 면담결과(2003.6).

8) 다만 물품의 불법적인 취득행위, 즉 공장, 기업소 물품의 절취, 횡령 그리고 불법적인 수입 즉 밀수 그 자체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단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9) 한국산 제품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가끔 거래되고 있다.

품은 옷, 신발,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학습장, 연필 정도이다. 이것도 상당수는 개인이 부업으로, 즉 가내수공업으로 생산한 것이다. 공장이 만드는 것은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학습장, 연필 정도라고 한다.

“평양의 경우, 종합시장에 나오는 북한산 제품은 식량, 식료품을 포함해 전체 물품의 10~20%를 넘지 않을 것이다”(탈북자 O, R씨).

평양이 이 정도라면 지방들은 북한산 제품이 더 적을 수 있다. 국경지대인 함북 새별의 경우, 개인들이 임가공해서 만드는 일부 공산품만 북한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산이라고 한다. 쌀도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탈북자 B, C씨).

나. 가격결정 메커니즘과 가격의 성격

종합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을 놓고, 그 가격의 성격을 국정가격으로 볼 것이냐 시장가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종합시장의 성격, 즉 계획 메커니즘이냐 시장 메커니즘이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국정(고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내각결정 27호에 의하면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는 쌀, 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 중요 품목에 대해 자체 실정에 맞게 한도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다.¹⁰⁾ 『조선신보』도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 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¹¹⁾고 전하고 있다. 가격이 한편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국은 가격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가격의 상한선 설정)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고시하는 상품의 한도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도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의 증언 및 외부관찰자들의 관찰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재 종합시장의 가격은 형태로는 국정가격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가격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 일본인이 촬영한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입구 게시판 사진에는 쌀의 ‘시장한도가격’이 kg당 240원으로

10) 뒤집어 보면 중요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시장가격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중요지표 제품에 대해서도 종합시장에서의 가격의 결정주체가 시, 군 인민위원회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즉 중앙의 지도를 받기는 하나 지방 차원에서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달리 보면 동일 제품에 대해 지방마다 가격이 달리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11) 『조선신보』, 2003.12.22.

적혀 있었다. 그리고 탈북자 P씨는 지난 2003년 7월경 같은 시장에서 시장관리원이 상인들에게 오늘 쌀을 150원 이상으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세 차례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¹²⁾ 따라서 시장한도가격이 9개월 만에 150원에서 240원으로 90원(60%)이나 인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강도 대흥단군 출신의 탈북자 I씨는 당국이 정한 시장판매 쌀 가격의 상한선이 지난 2003년 6월에는 150원, 11월에는 180원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상한선이 5개월 만에 30원(20%) 인상된 것이다.

당국은 종합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한도가격 혹은 가격상한선을 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상황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도가격은 시장가격을 추수하고 있다. 당국은 시장의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한도가격을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합시장에서의 당국의 가격지도(가격통제)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또 실제로 그러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는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여러 차례 목격한 일이다. 시장관리원이 오늘은 쌀 1kg을 150원 이상에 팔지 말라고 상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시장관리원이 있으면 팔지 않다가, 가고 없으면 사람들에게 170원에 팔곤 했다”(탈북자 P씨).

“국가가 기준가격을 제시하더라도 꼭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득을 많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 장사꾼의 심리이다”(탈북자 R씨).

“국가기준가격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품목이 쌀과 돼지고기이다”(평양출신 탈북자 N씨).

사실 종합시장에서 당국이 지도하는 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이 아니라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종합시장에서의 당국의 지도가격이 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도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제3의 암시장(black market)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종합시장의 위축을 초래함은 물론 종합시장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킬 것이다.

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

현재 종합시장에는 기존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하던 사람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 현재 상인으로서 개인 뿐 아니라 기관, 기업소의 판매관련 조직도 허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래 농민시장에는 개인만이 참여했으나 종합시장에서는 농민이나

12) 당시 쌀의 국정가격은 46원이었다고 P씨는 밝히고 있다.

일반 주민뿐 아니라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활동에 참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판매 매대의 약 5%는 공장, 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한다.¹³⁾

종합시장의 운영에 당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 주민들은 '시장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다. 또한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단위는 이것과는 별도로 자기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제때에 바치게 되어 있다. 통일거리시장의 경우, 지난 2003년 8월 시장이 문을 열면서 정해진 시장사용료와 국가납부금이 지난해 1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¹⁴⁾

탈북자들도 실제로 두 가지 명목의 세금이 징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양의 경우, 지난해 여름 현재 시장사용료는 만원 안팎이고 국가납부금은 품목에 따라 상이한데 하루에 공업품 500원, 육류 300원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탈북자 R씨). 다만 함남 단천, 함북 회령 등 지방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국가납부금이 100원 미만이었다. 함남 단천의 경우, 지난해 봄 현재 공업품은 60원, 생선, 식용유, 쌀은 40원, 농토산물 20원이었다(탈북자 H씨). 회령에서는 공업품이 50원, 식품류가 20~30원이었다(탈북자 D씨).

4. 종합시장의 파급효과

가. 생산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의 공간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내각결정 24호는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가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소비품 시장인 종합시장의 등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서 생산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시장판매 생산을 더욱 자극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해 현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붙어 있다.

함북 무산 출신 탈북자 F씨는 기업들이 콩을 통해 인조고기를 만들어 시장 상인

13) 『조선신보』, 2003.12.22.

14) 『조선신보』, 2004.9.7.

들에게 판매하게 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콩을 가지고 기름을 짜서 남는 것이 있다. 두박이라고 한다. 그걸 가지고 기계에 넣어서 고기를 만든다. 이것 인조고기라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것이 매우 인기가 있다. 원래 이것은 편의봉사사업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일반 공장, 기업소에서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제품을 가지러 온다. 이제는 장마당에서 물건 파는데 제약이 없으니까 공장, 기업소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 자금이 없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개인자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조고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콩을 사오려면 이 또한 자금이 필요하다. 또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돈 있는 개인을 끌어들인다”(탈북자 F씨).

하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시장판매가 용이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장에서 수입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평양 출신 탈북자 R씨는 비누의 예를 전하고 있다.

“공장에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데 중국산보다는 인기가 없다. 중국산이 외관도 낮고 질도 좋다. 그래서 가격도 차이가 난다. 중국산은 100~120원 선인데 국내산은 70~80원 정도¹⁵⁾이다.”¹⁶⁾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종합시장의 도입은 개인들의 부업생산(개인수공업)의 확대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내각결정 24호는 ‘개인들이 생산하는 상품들’도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수공업은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2003년 여름부터인가. 옷 공장에 다니던 기능공들이 대거 공장을 빠져나갔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지, 물가는 오르지 하니까 공장에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옷을 임가공하거나 나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렸다.”(탈북자 G씨)¹⁷⁾

15) 똑같은 제품이 국영상점에서 팔릴 때는 30~50원이라고 한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2가지의 가격이 존재하게 된 셈이다.

16) 개인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비누도 있다. 가격은 25~30원 정도이다.

17) G씨의 경우, 공장에서 일했다면 월 1,500~2,000원 정도를 벌었겠지만 공장에서 나와 개인수공업으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월 20,000~50,00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이 만드는 것으로는 옷, 신발, 모자, 비누, 빵, 사탕 같은 것들이 있다. 신발을 보자.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전문기술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원자재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거나 다른 사람들이 공장 자재를 훔쳐서 장사치들에게 판 것들이다. 그렇게 해서 집에서 신발을 만들어 시장 장사꾼들에게 넘겨준다”(탈북자 O씨).

『조선신보』도 개인수공업 생산 확대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늘어서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 등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내수공업으로 빵, 당과류 등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곤 했다, 그런데 7·1 조치 이후 평양시의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로 넘기게 했다. 상점에 진열된 이것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10원 정도 싸다”¹⁸⁾는 것이다.

<그림 1>은 탈북자 G씨의 사례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임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원재료(천)를 구입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본인은 재료 구입 및 견본 생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자르는 사람(재단사) 1명과 가공하는 사람(미싱사) 3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다. G씨와 재단사는 G씨의 집에서 일을 했고 미싱사들은 각자의 집에서 일을 했다. 최종 제품은 G씨의 집으로 다시 넘어왔고 이를 판매원이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러한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G씨이든 G씨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든 모두 공식적인 신분은 기관, 기업소 직원 혹은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식적으로 의류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에는 적만 걸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화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싹이 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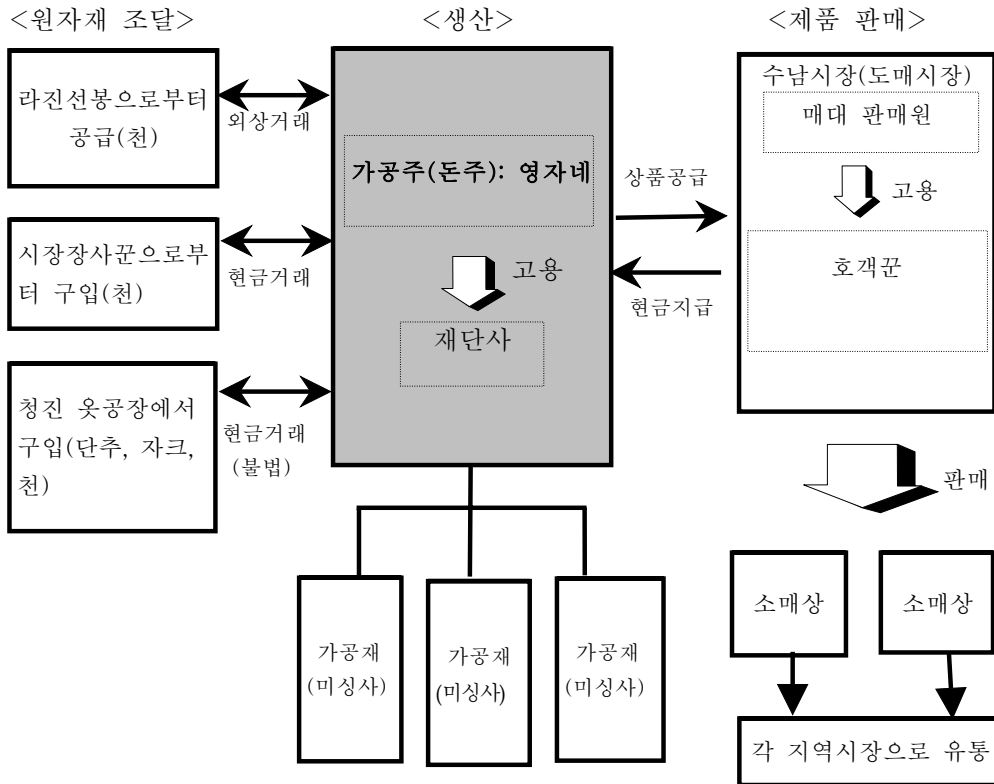
나. 유통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1) 무역 부문

무역기관 입장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輸入)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실제로 내각결정 27호는 무역회사가 수입한 상품이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8) 『조선신보』, 2003.9.27.

<그림 1> 영자네 옷가게 생산 및 유통과정(청진)



무역기관은 과거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관련 기관·기업소, 주민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수입, 즉 일종의 자가소비를 위한 수입을 수행했고 시장판매를 위한 수입은 음성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이제 무역회사들은 주민들에 대한 직접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국을 통한 중국상품 및 한국상품의 수입이 꽤 늘었다는 것이다(무역회사 지도원 출신 탈북자 N씨). “북한의 무역상사들은 (공산품의 시장거래가 허용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선풍기, TV, 냉장고, 컴퓨터, 기타 가전제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는 KOTRA 파리엔 무역관의 보고¹⁹⁾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7·1 조치 및 종합시장 도입 이후 외국과 직접 무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보다 많은 기관·기업소에게 주어지는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관련,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관, 기업소의 무역 수행에 개인자본이 들어갈 여지가 확대되었다

19) KOTRA 파리엔 무역관,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1년의 북한경제”, 2003.6.23.

는 것이다. 회령 출신 탈북자 D씨는 쌀 무역의 사례를 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언제인가 회령시장에서 쌀값이 크게 올랐을 때 중국에서 쌀이 대량으로 유입된 적이 있다. 공장, 기업소들이 개인자본을 끌어들이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쌀을 수입해 시장에 풀어놓았다. 공장, 기업소는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2) 국영상점 부문

한편 종합시장의 도입 이후 변화가 불가피한 부문이 국영상점일 것이다. 종전에도 상품고갈로 국영상점은 매우 고전했는데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국영상점은 고사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방식은 의외의 것이었다. 내각결정 24호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 제1백화점과 같은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해서는 무역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한 층별로 임대해 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 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의 면에서이다. 내각결정은 “무역성, 상업성, 국가제정국과 해당 기관들이 들여다 국영상점에서 파는 수입상품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조금씩 낮추는 원칙에서 상품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역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협정가격으로 할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가격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이제 두 가지가 생겼다. 하나는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영상점에 직접 혹은 중간상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영상점에 넘겨주는 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면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국영상점보다는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고 이 경우 북한당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영상점에서의 거래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영상점들은 전통적인 계획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이 침투하면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혹은 시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즉 국영상점의 시장화가 추진되는 셈이다.

탈북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영상점들의 시장화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즉 국영상점의 (위탁)수매상점화이다.²⁰⁾ 대표적인 것이 국영상점이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

20) 국영상점의 시장화에 대한 이하의 서술은 탈북자 B, C, E, L, O, R씨 등의 증언을 종합한 것이다.

여 중국이나 북한 국내에서 상품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²¹⁾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이윤으로 돌려주고 종업원 등의 생활비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위탁)수매상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개인이 부업으로 만든 제품을 수매상점에 위탁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빗자루, 쓰레받기 같은 것이다.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이다.²²⁾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수매상점은 크게 변질되었다. 국가에서는 식량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자 수매상점에서의 개인소유 상품의 매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팔아서 식량을 사 먹으라는 것이었다(탈북자 B씨). 거기에다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품 판매도 사실상 허용되었다.

“우리 집에 중국 손님이 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손님이 나에게 선물로 중국 상품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장마당에 가지고 나가 팔지 못하게 했다. 단속을 했다. 그래서 수매상점을 내왔다. 대신 팔아달라는 것이다”(탈북자 F씨).

명목은 이런 식이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이 거대한 암시장화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어차피 장마당으로 들어갈 중국제품이라면 국가가 운영하는 유통망 내에 포섭시키고 국가는 납부금이라도 챙기자는 것이다. 북한의 공장에서 만든 소비품의 장마당 유입을 막자는 의도도 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수매상점은 장마당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매상점의 암시장화가 진행된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고 수매상점의 종사자들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개인자본들도 유입되었다. 개인들이 자본을 투자해 상품을 중국이나 북한 국내에서 사 와 수매상점에서 판매해 자금을 회수하고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탈북자 F씨가 근무했던 수매상점에는 2명의 개인이 동업형식으로 자본을 투자했고 동시에 이들은 직접 수매상점에 근무했다.

그러던 것이 7·1 조치 혹은 종합시장 등장 이후에는 국영상점들이 수매상점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²³⁾ 함북 새별군 고건원 노동자구에는 2002년(혹은 2003년)에 국영 건재상점 자리에 수매상점이 들어섰다.²⁴⁾ 그러면서 각종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기 시작했다(탈북자 C씨). 평양 만경대 구역의 경우, 광복, 갈림길, 금성 등 서너 곳에 수

21) 이 경우 납부금은 판매액의 5%이다. 수매상점 출납원 출신 탈북자 C씨의 증언.

22) 탈북자 B씨는 “애초의 수매상점은 농민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23) 국영상점의 수매상점화가 진행된 것이 7·1 조치 이후인지, 종합시장 등장 이후인지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24) 원래 수매상점은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 편의봉사사업소 소속이고 국영상점은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 상업관리소 소속이다. 그리고 국영상점은 북한산 제품만 취급할 수 있으나 수매상점은 모든 수입제품(중국산, 한국산, 일본산 등)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매상점이 있었는데 2003년에는 7골, 8골, 삼흥, 선구자, 장훈, 축전 등지에도 수매상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탈북자 R씨). 그리고 새로 생긴 수매상점은 예전에 국영상점이었던 곳이다. 물론 함북 새별군 고건원 노동자구에 있는 수매상점처럼 ‘수매상점’이라고 간판을 내거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평양 만경대 구역의 8골 수매상점처럼 간판은 옛날 간판(8골 공업품상점)을 그대로 두고 공업품 상점 내의 일부 공간에 수매상점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사람들이 수매상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유리창에 조그맣게 수매상점이라고 써붙인다고 한다. 상점 앞에도 도로가 있으면 인도에 천막을 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뜨게 하기도 한다. 일종의 분점인 셈이다.

여기서는 수입품이 판매된다. 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판매되는데 대체로 시장가격보다 조금 높다. 특히 주거지역에 위치한 상점은 지리적 근접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시장에서처럼 흥정은 하지 못한다고 한다. 여기서 개인자본이 들어갈 소지는 충분히 있다. 국가에, 은행에 돈이 없으니까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하기도 한다. 탈북자 O씨의 친구는 평양시내에서 국영상점을 운영했는데 수매상점화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5천 달러를 빌려 썼다고 한다.

“국영상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위에서는 상품을 공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획 목표를 달성하라고 뒤통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을 벌라고 한다. 남들은 다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지배인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수매상점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완전히 드러내놓고는 하기는 어렵다”(탈북자 B씨).

한편 전술한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 수매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 수매상점 실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결정 24호는 ‘국영상점을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무역회사를 통한 국영상점 운영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한 뒤 맨 마지막에 수매상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주민들이 수매상점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며 수매상점들에서 수매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는 것이다.

후반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수매상점에 대한 탈북자들의 전언을 상당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앞의 <표 2>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매상점에 유입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밀수 등 불법적으로 조달된 물품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하면서까지, 나아가 국영상점의 일정 수준의 시장화를 용인하면서까지 국영상점의 상품공급량을 늘려 국영상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5. 종합시장의 성격과 의미

가. 종합시장에 대한 평가

북한에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한 것과 관련, 다음의 3가지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 조치는 4가지 시장 가운데 하나인 소비재시장, 그것도 구체적인 marketplace를 창설한다는 형태로 거시경제 운용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이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유통부문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면 이는 생산부문, 즉 공급자인 기업 및 개인수공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 종합시장의 등장으로 국영상점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는데 북한당국은 오히려 국영상점조차 시장화 혹은 유사시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장을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가 아래에서 나뉠대로는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종합시장의 도입은 시장화의 진전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사실 기업 및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었고 이는 기업행동에 시장원리가 침투되는 형태와 결합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상품화의 진전이고 분권화의 진전이기도 하다.²⁵⁾ 화폐화의 진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내각결정 24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종합시장 도입과 함께 국영기업소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살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동시에 기관, 기업소들에 일정한 범위의 현금유통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이 새롭게 부여되는 등 화폐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변화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나, 소유권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수공업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⁶⁾ 아울러 공식부문에 개인자본이 투입될 여지가 늘어났고 또 실제로 개인자본 투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²⁷⁾

25) 종합시장의 또 하나의 큰 의미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에 대한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생산·유통에 있어서 계획 메커니즘과 시장 메커니즘이 병존하게 되었고 아울러 가격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게 되었다.

26) 종합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7·1 조치 이후 식당, 당구장, 가라오케 등의 서비스업에 개인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넓어지면서 소규모 개인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27) 물론 개인자본이라 해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중소 규모의 자본에 불과하다. 그동안에는 장마당이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장마당 등을 통한 개인의 상행위, 나아가

나. 7·1 조치와 종합시장의 관계²⁸⁾

1) 7·1 조치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7·1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환율과 관세조정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변수입 지표의 등장과 독립채산제의 강화이다. 변수입 지표의 도입은 기업관리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이 의무화된 바로 그 제품에 대해 계획목표를 달성하고 남은 여분의 생산물을 처분(시장에서 판매)해서 획득한 수입도, 아울러 국가계획에 의해 생산이 의무화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생산, 처분(시장판매)해 획득한 수입도 이제는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달리 보면 기업에 대해 계획의 생산과 계획외 처분(시장판매)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탈북자 J씨, K씨). 바로 여기에 7·1 조치의 획기성이 있다. 물론 하나의 대전제가 있다. 국가계획에 의해 공급이 보장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 조달한 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이를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기업은 신규 생산 제품, 나아가 신규진출 업종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기존에 자신의 기업이 하던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신보』는 두 가지 예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는 락연합작회사인데 원래 재일동포 상공인과 공동으로 발포제를 생산하던 회사가 평양의 통일거리에 군고구마와 군밤을 판매하는 16개의 조립식 매대를 설치, 운영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았다.²⁹⁾ 또 하나는 조선무관세회사로 원래 호텔과 식당, 상점 등을 운영하던 회사인데 단추회사를 신규 설립했다.³⁰⁾

둘째, 시장을 통한 원자재 조달 및 제품의 시장판매가 허용되었다.

“7·1 조치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자재구입과 생산물처리에 대한 지배인의 권한 확대이다. 종전에는 자기 생산물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고 어디 가서 자재를 마음대로 사올 수도 없었다. 국가가 계획에 의해 정해진 대로 자재조달과 제품판매를 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7·1 조치로 사정이 달라졌다”(탈북자 S씨)³¹⁾.

자본축적에는 한계가 있었다.

28) 여기서 7·1 조치와 종합시장은 그 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9) 『조선신보』, 2003.4.28

30) 『조선신보』, 2004.8.11.

31) 탈북자 K씨도 유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조선신보』도 평양대극장봉사소(식당)가 청진, 신포의 수산사업소와 직접 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현지에서 직송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현금 대 현물의 유통이 제도화되어 자금만 있으면 원자재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³²⁾ 사실 『조선신보』가 소개한 락연합작회사도 원자재도 산지와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체로 확보했다. 대동단추회사도 원자재와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이 조직·운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장, 기업소간 과부족되는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유무상통하도록 하며 생산물의 일정 퍼센트를 자재용 물자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과 제품의 교환, 원자재와 원자재의 교환, 제품과 원자재의 교환 그 모두 다 가능하다. 우리 기업소의 경우, 발전기, 시동기를 주고 종이(필기지)를 받는 식으로 교환해 본 적이 있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이 되었다”(탈북자 K씨).

뿐만 아니다.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상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K씨가 근무했던 공장은 7·1 조치가 나오고 난 이후 공장에서만 생활필수품, 자동차 부속 등을 팔 수 있는 상점을 덕천 시내에 신규 설립했다. 탈북자 O씨는 평양 시내에서 배터리공장, 전선공장이 공장 정문 옆에 자사제품을 팔 수 있는 상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 이들은 공장직매점으로 불리고 있었다.

셋째, 기업의 현금보유가 허용되었다. 7·1 조치 이전에는 기업들의 현금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기업간 자재 및 생산물의 공급(거래)은 매매라는 형태를 띠기는 하나 이른바 무현금 거래였다. 그런데 7·1 조치로 기업들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스스로 자재를 조달하고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탈북자 J씨는 계획목표량을 넘어서는 초과생산물을 기업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은 기업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넷째, 기업이 공공연하게 개인자본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이 기업에 투자 혹은 대여라는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이 기업에 적을 걸어두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업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그 기업의 적을 취득하고, 출근을 비롯해 각종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게

32) 『조선신보』, 2004.2.2.

된다.³³⁾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적을 걸어두지 않으면 당국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특히 외화별이사업소 같은 곳에 적을 걸어두면 장사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명목으로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골동품 장사 경험 탈북자 M씨).

2) 7·1 조치의 성격과 의미

7·1 조치를 평가할 때 핵심적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품화·화폐화의 진전이다.³⁴⁾ 변수입 지표의 등장, 철저한 독립채산제의 실시, 소비재 무상급부제의 사실상의 폐지, 이에 따른 현물임금에서 화폐임금으로의 전환은 결국 화폐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이 복원되었다. 일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임금은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화폐를 축적해야 할 강력한 유인이 발생한 것이다. 기업도 계획의 생산 및 계획의 유통을 통해 현금 보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각종 원자재를 예컨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또한 종업원들의 생활비를 기업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기업은 화폐를 축적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7·1 조치로 인한 보조금의 폐지 등 가격개혁으로 화폐의 가치척도 기능도 일정 정도 회복되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경제에서 화폐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화폐는 점차 적극적인 역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의 생산이다. 당초 자신의 기업의 계획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더욱이 자신의 기존 생산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품을 신규생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품에 속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따라서 팔기 위한 생산, 즉 상품생산이 확대, 발전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상품화도 지적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적 성과의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적상품의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내각결정으로 지적제품 유통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 기업소에서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경우 일정 보수(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공짜였는데 이제는 유료화된 셈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적 성과가 특정 생산현장에 투입되어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익의 30%가 과학자들에게 환원되도록 되었다.³⁵⁾

“종전에는 농기계작업소가 농장에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어도 아무런 대가를

33) 이미 기업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8·3이라 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 3000원 정도만 바치면 공장에 월 1회 정도만 얼굴을 비칠 뿐 공장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림 1>에 나오는 G씨 및 그 고용인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34) 윤덕룡·이형근(2002)은 7·1 조치는 화폐화에 초점을 둔 개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35) 『조선신보』, 2004.1.1, 2004.3.6, 2004.8.28.

받지 못했다. 그것은 농기계 작업소의 의무였다.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도입되고 나서는 달라졌다. 이제는 농장에 나가서 기계를 수리해 주고 부속품도 깎아주고 하면 농장에서 그 대가로 쌀을 준다”(탈북자 E씨).

“내가 일했던 곳은 함북도 수산관리국 산하에 있는 어느 탄광이었다. 옛날에는 도내 모든 수산기지에 탄광을 공급해 주어도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이후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도 수산관리국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었다”(탈북자 A씨).

“기업소 노동력이 협동농장에 지원을 나가면 종전에는 국가에서 큰 보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보내기 한 정보 했다고 하면 그 농장에서 종업원 수만큼 현금 혹은 현물로 보상하게끔 했다. 많은 경우, 옛날에는 농장에서 지원단체가 공짜로 해주었는데 이제는 자기 농장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외부인력을 받지 않으려 한다”(탈북자 T씨).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나오고 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편의봉사관 리소 같은 곳에 신참이 배치되어 가면 기존 직원이 재봉, 이발 등에 대해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런데 과거에는 공짜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돈을 내고 배워야 한다. 재봉 같으면 삼사천원 주어야 기술을 배울 수 있다”(탈북자 F씨).

탈북자 T씨는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들어와서 기관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간 거래에서도 보수가 없이 무보수로 기술을 제공한다든가 노력을 판다는 것은 없어졌다. 보수가 없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신보』가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들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7·1 조치와 관련,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계의 확립’이라고 한 것³⁶⁾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또한 7·1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시장화의 진전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주의 물자 교류시장이라는 생산재 시장이 공식제도의 차원에서 등장했다. 그리고 명확한 형태로 지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기업간에 현금과 현물의 교환 방식으로 기업의 원자재 구매를 상당 정도 허용했다. 이 또한 생산재시장이다. 또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직매점이라는 형태로 직접 상점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소비재 시장이다. 아울러 기업이 수매상점 등을 통해 생산물을 위탁판매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 또한 소비재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에게 계획외 유통을 허가한 것 또한 소비재 시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계획외 생산이지만 시장판매 목적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시장이 기업의 행동에, 나아가 경제내 자원배분에 영향을

36) 『조선신보』, 2002.11.22.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3) 7·1 조치와 종합시장의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7·1 조치는 상품화, 화폐화, 시장화, 분권화의 진전으로 평가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시장도 상품화, 화폐화, 시장화, 분권화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7·1 조치와 종합시장의 연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달리 보면 종합시장은 7·1 조치의 후속조치, 보완조치라는 성격이 강하다. 기업에게 계획의 생산, 계획의 유통을 허용하고 공장 직매점을 새로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소비재 시장인 장마당은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장마당과 성격이 별로 다를 게 없게 된 수매상점은 합법(내지는 묵인)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딘가 모순적이다. 어떻게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다시 모호해질 수 있다. 내지는 장마당이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획의 생산, 계획의 유통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면 7·1 조치로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7·1 조치는 이미 종합시장의 등장을 내포 혹은 예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³⁷⁾

7·1 조치 직후 장마당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고 반면 종합시장으로 장마당을 풀어주었다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7·1 조치와 종합시장은 모순적일 수 있다. “북한당국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직하다. 하지만 좀더 시야를 넓힌다면 종합시장은 7·1 조치의 후속조치이며 동시에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 나름대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다.

물론 종합시장은 7·1 조치와의 단절성도 분명 존재한다. 7·1 조치 하에서 장마당은 불법이었고 종합시장 하에서는 합법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의 80~90%를 장마당에 의존할 정도로 암시장이 거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를 합법화, 양성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과급효과도 엄청나다. 불법적인 암시장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기존 암시장에의 상품 공급 행위도 일정 정도 합법화된다는 의미를 가진다(<표 2> 참조). 이는 그만큼 생산과 유통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³⁸⁾

그간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은 농민시장,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정도였다. 그런

37) 물론 7·1 조치 이후 생산이 기대했던 것만큼 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진행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종합시장을 허용했다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달리 보면 7·1 조치의 제한적 성격 및 성과부진이 보다 개혁적인 조치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이런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논리적 연관성 같은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38)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종합시장의 등장은 종래 장마당 판매 목적의 개인수공업용을 합법화하면서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7·1 조치는 개인들의 수공업용을 합법화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데 종합시장은 규모나 거래품목 등의 면에서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조선신보』는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종합시장의 운영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심도와 폭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변이라 할 수 있다”(2003.12.22).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취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경제개혁의 연장선에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을 것이다”(2003.6.16).

사실 종합시장은 시장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7·1 조치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라는 것이 현실과 공식제도의 겹을 메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³⁹⁾ 이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7·1 조치를 내놓으면서 장마당을 양성화하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따라서 장마당은 불법의 영역으로 둔 상태에서 상품화폐관계, 시장화의 확대를 도모했다. 그런데 역시 장마당은 암시장의 상태로 둔 상황에서는 7·1 조치의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기업활동 등의 면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부작용이 컸을 수 있다. 따라서 7·1 조치가 나온지 1년 남짓한 시점에서 결국 암시장을 양성화하는 형태로 종합시장을 도입, 시장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다. 종합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도와 결과

북한의 종합시장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위로부터의 시장화는 기업과 가게 등 말단 경제주체들의 자력갱생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경제적 활동을 용인하되, 국가는 기업에 대해 생산에 필요한 노동, 자본, 원자재 등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 북한의 시장화는 그 배경에 있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기조인 이중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핵심적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 아니 정확하게는 계획경제의 틀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명령과 강제를 통해 확실하게 장악, 관리하는 한편 여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다. 즉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기업 및 산업과, 국가가 방임하는 기업 및 산업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다. 전자는 중공업 부문으로 대표되는 국가 기간산업이고 후자는 경공업 부문

39) 물론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이 현실과 공식제도의 겹을 메우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소비재 부문이다.

그런데 북한당국이 지향하는 것은 관리가능한 시장화이다. 즉 시장화를 확대하되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내지는 시장화를 확대하되 이에 상응해서 국가도 시장화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기존 사회질서 동요, 기강해이를 막겠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들로부터, 특히 방임하는 기업·산업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 주민들로부터의 자금 환수 확대를 통해 재정난 및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는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북한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의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편 종합시장 정책의 목적은 크게 보아 다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⁴⁰⁾ 첫째, 국가 재정난의 완화, 둘째,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셋째,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의 확대이다. 그런데 세 번째인 상품공급 확대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재정난 및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기여한다. 사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난 및 인플레이션 문제는 최대의 고민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부족은 나라 살림의 궁핍, 국가의 제반 활동의 부진뿐만 아니라 군수산업을 비롯해 국가 기간산업의 투자 위축 및 생산 부진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고정급여자의 실질소득 감소 및 국가 지도부에 대한 불만 증대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종합시장 도입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증대라 한다면 이 측면에서 성과는 어느 정도 기대 가능하다. 예컨대 종합시장 판매 목적의 생산은 그 자체뿐 아니라 국영상점용 생산의 계획목표 달성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암시장 행위의 합법화는 시장행위 그 자체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또한 경제의 내부 자원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개혁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만은 부인하기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전력이 부족하고 원자재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는 제도개혁의 성과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시장 물가가 지난해 봄 이후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종합시장 정책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 한편으로 종합시장 정책의 목적이 재정난 완화에 있다면 이 또한 부분적인 성과는 기대 가능하다. 종합시장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기존에 장마당에서 거두는 것보다는 많을 것이고 이것이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몫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40) 7·1 조치의 목적도 이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렇다고 해도 이러한 재정수입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반면 종합시장 도입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쌍궤제(dual track) 경험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각종 투기와 부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시장에 공급되는 물품의 공급원천의 합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빈부격차의 확대, 시장마인드의 확산 등도 큰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종합시장 발달에 따라 국영상점망의 위축, 국영상점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개인수공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시장경제질서의 확산 및 공식부문의 침식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종합시장의 도입은 단순히 소비재 시장의 등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과 함께 시장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양자는 서로 일종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서로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6. 맺음말에 대신하여: 향후 전망

종합시장의 지속성을 좌우할 변수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내외 정치적 변수, 특히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관계의 개선 여부로 대표되는 국제정치적 변수가 중요하다. 물론 개혁의 내적 압력의 누적, 개혁적 조치의 불가역성의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동시에 종합시장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의 정도도 중요한 변수이다.

다소 위협스럽긴 하지만 글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중단기적인 전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큰 흐름으로 보아 시장화는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계획영역(직접적 명령의 영역)이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경제운영에서의 이중구조, 이중전략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화가 진전되더라도 소유의 측면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않는 한 소유의 문제는 현재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라고 북한당국이 주장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돈을 벌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 북한은 어느덧 돈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위해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북한당국은 주장하고 있다.⁴¹⁾ 그리고 이는 현재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공식적인 소유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사유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면서 시장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41) 북한당국은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의 과도적 성격을 강조해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신준(2001), 『자본론의 세계』, 서울: 풀빛.
- 강일천 (2003),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학술세미나 자료집).
- 김연철 (2002),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김연철·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박재규 편(2005),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증보판)』, 서울: 법문사.
- 양문수(2004a), "경제위기와 개혁·개방의 모색," 박재규 편,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 (2004b), "기업을 통해 본 북한의 변화: 최근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1호.
- 윤덕룡·이형근(2002),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 최용선(2004), "1990년대 북한의 화폐화와 화폐제도 변화,"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연구원 (2004),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 홍익표·동용승·이정철(2004), 『최근 북한의 가격 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 과제 - 중국과의 비교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山口重克編(1997), 『市場經濟: 歷史, 思想, 現在(增補版)』,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 芝原拓自 著, 김홍식 이영훈 역(1990), 『소유와 생산양식의 역사이론』, 서울: 비봉출판사.
- K. Polanyi 著, 박현수 역(1983), 『인간의 경제 I』, 서울: 풀빛.
- 『조선신보』, 각호.